

■ 動力資源部告示 第83-17号 ■

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収入金의 징수 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損失補填에 관한 告示

石油事業法(이하「法」이라 한다) 제17條의 3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輸入業者 또는 石油精製業者가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 및 法 第17條의 4 第3号의 규정에 의한 損失補填基準을 石油事業法시행령(이하「令」이라 한다)第13條, 第14條 및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83. 6. 30

動力資源部長官

- 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収入金의 징수금액
 - 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수입석유 1 배럴당 美합중국통화 3.19달러(비축기금 1.0달러, 開發基金 0.1달러, 安定基金 2.09달러)에 선적일로부터 30일이내의 납부일의換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프로판·부탄 수입시의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다음의 금액에 선적일로부터 30일이내의 납부일의換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長期低価輸入分

1 메트릭톤당 154달러(備蓄基金+開發基金: 54달러, 安定基金: 100달러)

(2)現物市場高価輸入分

1 메트릭톤당 154달러(備蓄基金+開發基金: 54달러, 安定基金: 100달러)에 현물시장 고가수입 CIF가격과 장기저가수입 CIF가격과의 차이의 60%를 備蓄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収入金으로 추가되며, 국내수급상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에 대하여는 備蓄基金과 開發基金을 합한금액 1 메트릭톤당 54달러를 징수하고 安定基金을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징수

① 기준 CIF가격보다 低価導入分: 1 메트릭 톤당

100달러

② 기준 CIF가격보다 高価導入分: 1 메트릭 톤당

100달러 - (실도입 CIF가격 - 기준 CIF가격)

× 1.261

○ 실도입 CIF가격은 "LPG in World Markets"誌에 발표된 선적된 달의 CIF 日本도착 최고가격을 상한선으로 하되 선적된 달의 日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전월의 실적치를 준용하고, 프로판과 부탄중 한 油種의 日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우디 공시가격의 프로판·부탄가격 차이를 기준하여 산출 적용

○ 기준 CIF가격

- 精油社導入分: 프로판 497,620원/톤, 부탄 496,910원/톤을 선적후 30일의換率로 환산한 달러화 금액에서 154달러/톤을 차감하고, 이를 1.261로 나눈 금액

- 正友에너지(주)도입분: 프로판 319.96달러/톤, 부탄 319.96달러/톤

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석유류제품 가격고시대상이 아닌 유종으로서 가공하여 일반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특수석유제품(서울火力用유황함량 0.3%이하인 저유황B-C油, 아스팔트에멀존, 아스팔트콤파운드, 하이솔벤트, 에비가스 등)을 수입한 경우에는 令 제13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原油 및 석유제품수입에 따른 손실보전기준

가. 令 제16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原油도입 선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原油도입추가운송비, 추

가금융비 및 수입장려금의 지급기준

(1) 추가운송비의 지급기준

가) 原油道入先 多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原油에 대하여는 석유 정제업자가 해당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배럴당 운송비와 당해사가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배럴당 운송비와의 차이를 아래 기준에 따라 매 항차별로 산출보전하여 연말에 정산한다.

○ 항차별보전기준 : (多邊化原油 배럴당운송비 - 多邊化原油 도입전 분기의 中東원유 배럴당운송비) × 多邊化原油 운송비 실지급일의換率 × 1.0774 × 다변화도입물량

○ 연말정산기준 : (매항차 多邊化原瀉 배럴당운송비 - 연간 中東원유배럴당운송비) × 多邊化原油운송비 실지급일의換率 × 1.0774 × 다변화도입물량

나) 당해연도에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지 아니한 석유정제업자에게 전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운송비를 보전, 정산코자 할 경우에는 中東지역으로부터의 운송비를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최근연도 실적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 적용한다.

○ 中東지역으로부터의 운송비 산출기준 : 최근년도의 실적치 ×

보전대상년도의 world scale × 평균운임
최근년도의 평균 word scale × 평균운임

요율(AFRA)
요율(AFRA)

(2) 추가금융비의 지급기준

가) 原油道入先 多邊化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原油에 대하여는 석유정제업자가 해당지역으로부터의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수송기간과 당해사가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수송기간의 차이에 따른 금융비 추가부담을 아래기준에 따라 매항차별로 산출보전하여 연말에 정산한다.

○ 항차별 보전기준 : 유전스 실지급이자 ×

〔다변화원유도착기간 - 中東원유의 전분
(당해원유의 유전스사용일(이자발생일

기 평균도착기간〕
기준〕

○ 연말정산기준 : 유전스 실지급이자 ×

〔다변화원유도착기간 - 中東원유도착기간
당해원유의 유전스사용일(이자발생일기준)〕

나) 당해연도에 中東지역으로부터 原油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업자에게 전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금융비를 보전, 정산코자 할 경우의 中東지역으로부터의 도착기간은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최근연도 실적치를 적용한다.

(3) 수입장려금의 지급기준

原油道入先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입장려금은 도입선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原油에 대하여 1 배럴당 0.7 달러에 선적일로부터 30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安定基金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입금 중 1 배럴당 0.15 달러의 징수를 면제하고 잔여 0.55 달러는 매항차 별로 원유도입 추가운송비 및 추가금융비를 보전할 시에 지급한다.

(4) 원유도입선다변화 지원대상

이 告示에서 原油道入先다변화 대상지역이라 함은 美洲 및 아프리카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입장려금은 原油道入先다변화 대상지역으로부터 정부, 국내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產油국 정부 또는 산유국의 국영석유공사와 장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原油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부 칙

1. 이 告示은 1983년 6월 15일 이후 통관되는 석유로부터 적용한다.
2. 1983년 6월 15일 이후 통관된 石油分중, 1983년 5월 16일 이전 선적된 原油에 대하여는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을 1 배럴당 3.19 달러(비축기금 1.1 달러, 안정기금 2.09 달러) 징수하고, 1983년 6월 5일 이전에 선적된 LPG에 대하여는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을 1 메트릭톤당 186 달러(비축기금 + 개발기금 86 달러, 안정기금 100 달러)를 징수한다.
3. 原油道入先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도입 추가운송비, 추가금융비 및 수입장려금의 미보전액과 앞으로 발생할 보전대상액은 安定基金조성액 (原油 0.15 \$/B, 石油製品에 부과하는 安定基金 전액)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4. 動力資源部告示(第83~11号, 1983. 5. 3.)는 이 告示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